

과세이연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즉시
신청인	① 상호 또는 법인명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대표자성명	④ 생년월일
	⑤ 주소 또는 본점 소재지 (전화번호:)	

신청내용	
⑥ 과세연도	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

(전환전사업의 자산, 대토보상, 기존공장, 종전어린이집, 종전사업용부동산) 양도 명세

⑦ 자산명	⑧ 소재지	⑨ 면적(㎡)·수량(개)	⑩ 양도일	⑪ 양도가액	⑫ 취득가액등
합계					

(전환사업의 자산, 대토보상, 지방공장, 신규어린이집, 신규사업용부동산) 취득(예정) 명세

⑬ 자산명	⑭ 소재지	⑮ 면적(㎡)·수량(개)	⑯ 취득일	⑰ 취득(예정)가액	⑱ 이연취득가액 (⑰ - ⑲)
합계					
양도소득세	⑲ 과세이연 금액 $[(⑪-⑫) \times ⑰ \div ⑪]$		⑳ 과세이연 세액 $(⑲ \times \text{세율})$		

「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」 제30조제12항
제73조제6항
제79조의3제9항
제79조의6제7항
제116조의37제9항
에 따라 과세이연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세무서장

귀하

작성 방법

1. 양도자산 및 취득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에 이어서 작성합니다.
2. "⑦ 자산명"란: 전환전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고, "⑬ 자산명"란에는 전환사업의 사업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의 명세를 적습니다.
3. "⑪ 양도가액"란: 양도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4. "⑫ 취득가액등"란: 사업전환, 공장지방이전, 어린이집대체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의 경우에는 [취득가액+그 밖의 필요경비]를 적고, 대토보상의 경우에는 [취득가액+그 밖의 필요경비+장기보유특별공제액]을 적습니다.
5. "⑱ 이연취득가액"란: "⑰ 취득(예정)가액"에서 "⑲ 과세이연 금액"을 뺀 금액을 적습니다. 이 경우 ⑰란에 취득예정가액을 적는 경우에 그 예정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⑱・⑲란에 적지 않습니다.
6. ⑲ 과세이연금액 계산 시 적용금액은 각각 다음의 가액을 적습니다.

가.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3조)를 적용받는 경우

$$(\text{⑪ 양도가액} - \text{⑫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\text{⑰ 전환사업의 자산취득(예정)가액}}{\text{⑰ 전환전사업의 자산양도가액}}$$

나.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2)를 적용받는 경우

$$(\text{⑪ 양도가액} - \text{⑫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\text{⑰ 지방공장의 취득(예정)가액}}{\text{⑰ 기존공장의 양도가액}} \times \left(1 - \frac{\text{⑮ 지방공장면적} - \text{⑨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}}{\text{⑨ 기존공장면적의 100분의 120}}\right)$$

다. 어린이집용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85조의5)를 적용받는 경우

$$(\text{⑪ 양도가액} - \text{⑫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\text{⑰ 신규보육시설의 취득(예정)가액}}{\text{⑪ 종전보육시설의 양도가액}}$$

라.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77조의2)를 적용받는 경우

$$(\text{⑪ 양도가액} - \text{⑫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\text{⑰ 대토보상당액}}{\text{⑪ 총보상액}}$$

마.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과세특례(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21조의34)를 적용받는 경우

$$(\text{⑪ 양도가액} - \text{⑫ 취득가액등}) \times \frac{\text{⑰ 신규사업용부동산의 취득(예정)가액}}{\text{⑪ 종전사업용부동산의 양도가액}}$$

7. "⑳ 과세이연세액"란: ⑲ 과세이연금액에 「소득세법」 제104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적습니다.